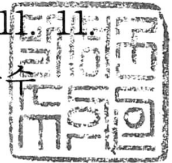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2181
----------	------

제안연월일 : 2022. 11. 11.

제안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2023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3,938천 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을 출연금으로 배정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3. 출연기관 현황

출연 심의요구서

출연대상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대 표 : 배 진 환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인 력 : 정원 92명 / 현원 69명 • 주요사업 :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연금액	○ 출연 예정금액 : 23,938천 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2f2f2;"> <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22년 예산액</th><th rowspan="2">2023년 요구액</th><th colspan="5">재원별</th></tr> <tr style="background-color: #f2f2f2;"> <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 </thead> <tbody> <tr> <td>합계</td><td></td><td style="text-align: right;">24,697</td><td style="text-align: right;">23,938</td><td style="text-align: right;">23,938</td><td></td><td></td><td style="text-align: right;">23,938</td><td></td></tr> <tr> <td>기관 운영비</td><td style="text-align: center;">1년</td><td style="text-align: right;">17,041</td><td style="text-align: right;">17,406</td><td style="text-align: right;">17,406</td><td></td><td></td><td style="text-align: right;">17,406</td><td></td></tr> <tr> <td>주요 사업비</td><td style="text-align: center;">1년</td><td style="text-align: right;">7,656</td><td style="text-align: right;">6,532</td><td style="text-align: right;">6,532</td><td></td><td></td><td style="text-align: right;">6,532</td><td></td></tr> <tr> <td>연구사업</td><td style="text-align: center;">1년</td><td style="text-align: right;">2,223</td><td style="text-align: right;">2,285</td><td style="text-align: right;">2,285</td><td></td><td></td><td style="text-align: right;">2,285</td><td></td></tr> <tr> <td>자치단체지원</td><td style="text-align: center;">1년</td><td style="text-align: right;">5,433</td><td style="text-align: right;">4,247</td><td style="text-align: right;">4,247</td><td></td><td></td><td style="text-align: right;">4,247</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합계		24,697	23,938	23,938			23,938		기관 운영비	1년	17,041	17,406	17,406			17,406		주요 사업비	1년	7,656	6,532	6,532			6,532		연구사업	1년	2,223	2,285	2,285			2,285		자치단체지원	1년	5,433	4,247	4,247			4,247	
구 분	사업 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합계		24,697	23,938	23,938			23,938																																																					
기관 운영비	1년	17,041	17,406	17,406			17,406																																																					
주요 사업비	1년	7,656	6,532	6,532			6,532																																																					
연구사업	1년	2,223	2,285	2,285			2,285																																																					
자치단체지원	1년	5,433	4,247	4,247			4,247																																																					
필요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지도감독 부서의견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음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이사회 결산 감사

-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들을 원활히 집행하였고, 특히 교육·학술행사 등 대외 활동은 온라인 중계행사 등 대안을 마련 원활히 수행하였음
- 결산서 및 외부감사인(신우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연구원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내용은 재무회계규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고, 사업 및 예산 집행이 계획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확인됨

○ 운영실적 평가

- 연구과제의 양적·질적 증가, 정책 반영 확대, 고객지향적 실효성 확대 등 그 성과가 확대되었으나, 연구의 질 향상 및 관리체계의 적성성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등 예산운용 기준과 예산집행절차는 적정. 향후 기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체수입 즉, 외부 수탁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협력사업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나, 연구원의 핵심업무영역으로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확충과 연구원 전체의 업무에서 비중 설정이 필요함

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연구사업과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입 확충과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을 제안하고 점검하겠음

③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결산 지방세	2021년 결산 보통세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출연금	199,481,248	199,479,612	23,938	23,938	0	△938

④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 고
○	○	○	○	○	○	○	

출연기관 현황

[단위 : 백만 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 2월 설립등기 ◦ 2011. 4월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2. 8월 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 · 파견		
	85명		69명 (원장 1, 부원장 1, 연구위원 22, 연구원 17, 조사분석직 6, 전문직 3, 사무직 18, 시설직 1)		16명 (위촉연구원 5, 파견공무원 9, 청사관리원 2)		
임원 (‘22.8월 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백재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 12. 22. ~ ’23. 12. 21.		
	부이사장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		’22. 2. 28. ~ ’23. 2. 27.		
	이사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연직		
	이사	진명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연직		
	이사	김선조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2. 2. 28. ~ ’23. 2. 27.		
	이사	안승대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2. 2. 28. ~ ’23. 2. 27.		
	이사	김기홍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22. 2. 28. ~ ’23. 2. 27.		
	이사	황명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22. 2. 28. ~ ’23. 2. 27.		
	이사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		’22. 2. 28. ~ ’23. 2. 27.		
	이사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22. 2. 28. ~ ’23. 2. 27.		
	이사	김재욱	경상북도 칠곡군수		’22. 2. 28. ~ ’23. 2. 27.		
	이사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2. 2. 28. ~ ’23. 2. 27.		
	감사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김능식	오산시 부시장		’22. 2. 28. ~ ’24. 2. 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 ¹⁾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직전연도말 기준)	10,821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21. 12. 31.기준	자산	20,999
	예산액 ²⁾	10,855	11,928	14,200		부채	1,147
	지자체 지원액 ³⁾	8,972	10,821	11,160		자본 ¹⁾	19,853
경영성과 ’21.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376			11,094		1,282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